

의안번호	2208219
의 퇴 인	홍기원 의원
회 답 일	2025. 4. 3.
추 계 번호	25B04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및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제127조제2항에서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의무규정
2	안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무인자유기구,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¹⁾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함(제2항)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하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제3항)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²⁾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구역·통제구역·주의구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³⁾에서 비행하는 경우	의무규정

-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2. 상세 사유

□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 승인 대상 확대

- 개정안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의 정의를

-
- 가.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3의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5호의 업무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최저비행고도) 법 제68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⑥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무게 2킬로그램 이하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임

-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법 제2조제3호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구류를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繫留式)기구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4.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개정안은 시행규칙의 기구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게 2킬로그램 이하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27조제3항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⁴⁾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행법 시행령 제26조⁵⁾에 따라 현행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4) [참고자료 1] 공역의 구분 참고

5)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53.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53의2.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9.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

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승인 업무를 지방항공청장, 국방부장관, 현행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임·위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승인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지방항공청		4,880	6,265	6,732
부산지방항공청		5,330	6,556	7,496
제주지방항공청		550	780	1,277
국방부장관	P518	4,022	4,632	3,879
	P61A~P65A	96	135	131

주: 1. 국방부의 비행승인 현황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승인한 현황임 (합동참모본부 관할 지역 일부에 한정된 현황)

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중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권한이 있는 곳은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과 대한항공 정식비행장 등 2곳으로, 해당 비행장 등 한정된 지역에 대한 승인 권한이므로 현황에서 제외함

자료: 국토교통부 및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 시행 시, 지방항공청장 및 국방부장관 등은 무게 2킬로그램 이하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업무가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력 증원 등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증가할 비행승인 신청 건수를 예측할 수 없어 증가하는 업무량 및 필요 증원 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3.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공역의 구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공역의 구분(제221조제1항 관련)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 공역	A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B등급 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E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 공역	F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업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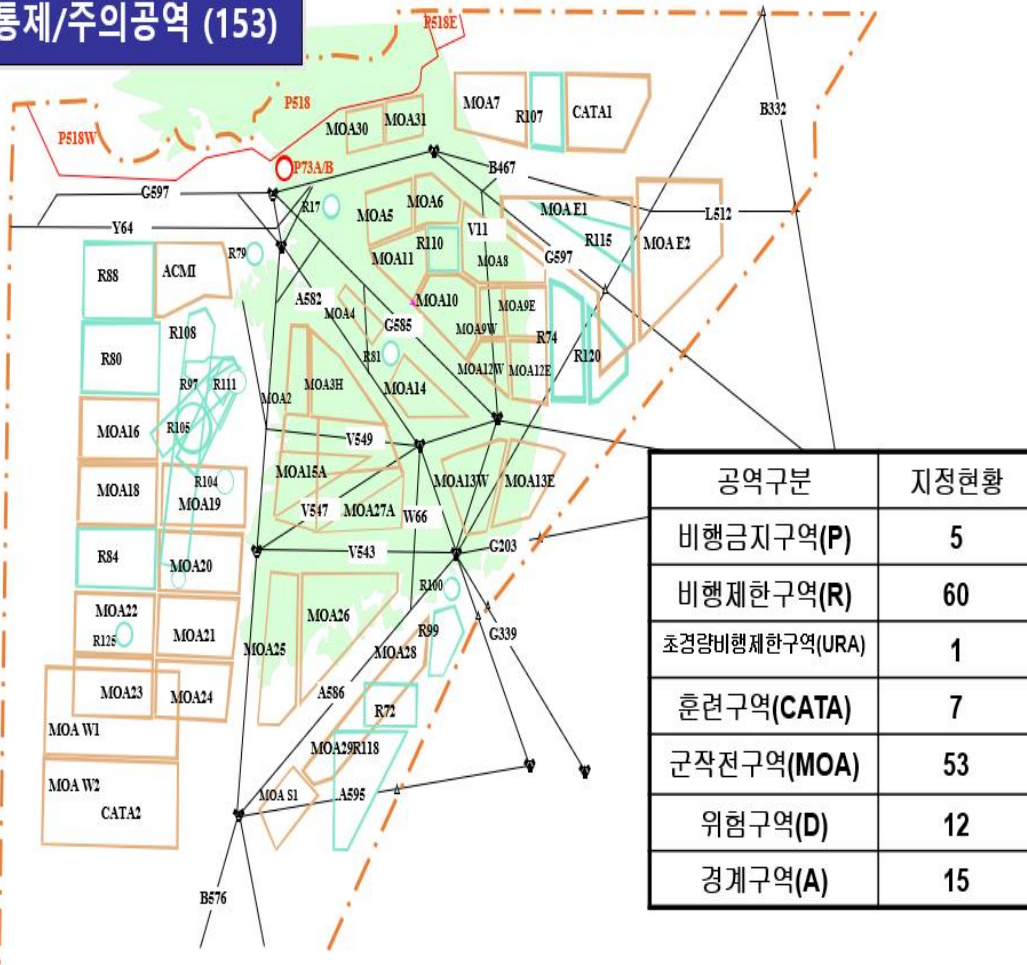
구분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조업구역	항공교통조업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구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구역
주의구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구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는 구역으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구역

[참고자료 2] 우리나라 공역 중 통제/주의공역 현황6)

공역지정 현황

통제/주의공역 (153)



6) 국토교통부 제출자료